

홍보위원회 규정

- 제정 : 2005. 3. 1.
- 개정 : 2017. 2. 28.
- 개정 : 2018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의 대내·외 홍보를 위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,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대내·외 홍보 및 이벤트 활동
2. 대학 홍보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, 분석 및 활동
3. 기타 홍보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본교 교원 및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3-0-27 홍보위원회 규정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